

2018년 7급 공채 교정학 기출문제(나책형) 해설

- KG패스원, 에듀에프엠 교정학 임현

문 1.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 ② 통제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③ 일반긴장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④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긴장 내지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에 노출된 사람은 긴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범죄와 비행에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거시이론인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긴장이론을 수정·확대하여 주장한 일반이론이다. 일반긴장이론은 긴장 내지 스트레스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설명을 할 뿐, 계층에 따라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낙인이론은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왜 사람을 일탈자로 인정하고 차별하며, 평가하여 자아의 왜곡된 의식을 심어 주는지를 연구하여, 일탈행위와 사회적 낙인화과정의 동적 관계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론이다. 낙인이론은 특히 공적 통제작용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고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점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 ②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법률적 통제이론에서는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의 효과를 강조하고,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에서는 인간의 범행잠재력은 사회의 유대 또는 통제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주장한다.
- ④ 사회해체론에서는 범죄가 많은 지역의 특징을 탐구한 결과, 사회해체지역에는 그 지역사회가 고유하고 안정적인 특징이 있고 주민의 이동이 많으며,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 2.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 ② 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 ③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 ④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학파이다. 즉 고전학파는 자유의지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강조한다. 실증주의에서는 개인은 소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

므로,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문 3.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행위의 학습과정과 정상행위의 학습과정은 동일하다.
- ② 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 ③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경험에서 비롯된다.
- ④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심리학적 원인론과 달리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른 없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범죄인의 행위도 일반인의 행위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범죄행위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②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을 통한 학습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므로, 이 이론에서 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

③ 서덜랜드는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관련하여 법 위반에 대한 관념을 중시하였다. 즉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학습한 정도보다 법을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학습한 정도가 클 때에 범죄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나 차별경험과는 관계가 없다.

④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범죄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본다. 즉 범죄는 부모, 가족, 친구 등 친밀한 집단들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서 학습되며, TV·라디오·영화·신문·잡지 등과 같은 비인격적 대중매체에 의한 학습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은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이다.

문 4. 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 ②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③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 ④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의료모형(medical model)이다.

정의모형(justice model)은 비결정론 내지 자유의사론적 시각에서 공정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델을 말한다. 기존의 의료모델이나 개선모델이 재범방지에 그다지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극단적인 의료모델이나 개선모델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고, 형사사법기

관의 재량권 남용은 시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아 처우의 중점을 정의 내지 공정성 확보에 두고 범죄자의 법적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5.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 ② 중도부처는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다.
- ③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형조에 있었다.
- ④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현재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위리안치(圍籬安置)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는 유배지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왕족이나 고관에게 부과된 유형에는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는 다른 유형과 달리 가족동반도 금지되었다.

② 중도부처(中途付處)는 관원에 대한 유형으로, 가까운 중간 지점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하는 형벌로, 안치보다는 가벼운 유배형이다.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죄를 저지른 왕족, 고관에게 부과했던 안치(安置)이다.

③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그 유배지의 수령에게 있었다.

④ 유형은 유배지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하는 형벌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어 오늘날의 무기금고형에 해당한다.

문 6.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정시설에서 문화, 관습,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ㄴ. 박탈모형은 수형자의 문화를 사회로부터 수형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파악한다.
- ㄷ. 유입모형은 교도소화의 원인을 수용으로 인한 고통 및 각종 권익의 상실로 본다.
- ㄹ. 자유주의자들은 박탈모형을, 보수주의자들은 유입모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 교도소화(prisonization)란 수형자가 교도소에 입소 후 교도소사회의 문화, 관습, 규범 및 가치에 동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ㄴ. (×) 지문은 유입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박탈모형(deprivation model)은 교도소의 수용에 따른 고통, 권익의 박탈에 대한 수형자들의 저항으로 교도소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모형을 말한다.

ㄷ. (×) 지문은 박탈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유입모형(importation model)은 수형자의 교도소화는 교정시설 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특정한 문화가 수형자의 입소와 함께 유입된 것이라고 보는 모형을 말한다.

ㄹ. (○) 자유주의자들은 범죄자를 격리·구금하는 시설내 처우를 피하고, 사회내 처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시설내 처우는 박탈모형에 따라 교도소의 수용에 따른 고통, 권익의 박탈에 대한 수형자들의 저항으로 교도소화가 진행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회내 처우를 강조한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범죄자를 시설에 격리·구금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좋지 않은 문화에 빠져 있는 범죄자들을 격리·구금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시설내 처우를 강조한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사회에서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용함으로써 사회의 부문화가 교도소로 유입된 것이라는 유입모형과 연결된다.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혼거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목욕 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①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 ②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 ③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 ② 소장은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장은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4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4항 : 소장은 제108조 제14호(금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동법 제112조 제3항

③ 소장은 제108조 제13호(실외운동 금지) 또는 제14호(금지)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112조 제5항).

④ 동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문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동법 제26조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移送)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2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③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④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정답 : ③

☞ 해설 : ③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는 미결수용자인 신입자로서 정식입소절차에 의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② 동법 제16조의2 제1호

④ 동법 제16조의2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10항 및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참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017.12.19.에 신설되었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②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③ 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 ① 동법 제73조 제1항
- ③ 동법 제108조 제3호
- ④ 동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호 사목

문 12. 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 ②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규정이 마련되었다.
- ③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 ④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미군정기에 “우량수형자석방령”이 실시되었고 이는 선시제도의 하나이다. 다만 간수교습규정은 일제시대인 1917년에 간수를 채용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둔 규정을 말한다. 즉 일제시대에는 간수교습소를 두고 매년 1~2회 우수한 간수를 선발하여 특수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신임간수장 등과 함께 일본 형무관연습소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 ① 조선시대의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폐지되었다.
- ③ 교정시설의 명칭은 일제시대에는 1923년부터 ‘형무소’를 사용하다가, 1961년 법 개정으로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 ④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에는 징역수형자에 대한 기초적 분류 및 누진처우를 규정하였다. 수형자를 보통자, 특수기능소지자, 노우자, 부녀자의 4종으로 구분하고, 각 수형자의 종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고 수감기간에 따라 계호를 완화하는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였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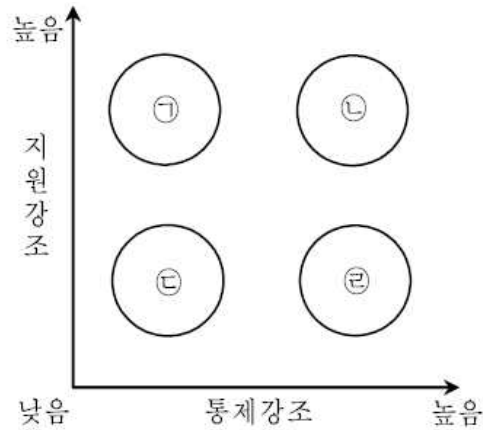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사람(“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 ①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항

- ②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2항
- ③ 동법 시행규칙 제143조

문 14. 올린(L. E. Ohlin)의 관점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통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할 때, ㉠~㉤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 | ㉣ |
|-----------|---------|---------|---------|
| ① 복지적 관찰관 | 보호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
| ② 보호적 관찰관 | 복지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
| ③ 복지적 관찰관 | 보호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
| ④ 보호적 관찰관 | 복지적 관찰관 | 처벌적 관찰관 | 수동적 관찰관 |

☞ 정답 : ①

☞ 해설 : ① 올린(L. E. Ohlin)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유형으로 i) 위협을 수단으로 대상자를 규율에 동조하도록 통제를 강조하는 처벌적(punitive) 보호관찰관, ii) 자신의 목표를 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에 두고 지원기능을 강조하는 복지적(welfare) 보호관찰관, iii) 통제기능과 지원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보호적(protective) 보호관찰관, iv) 통제나 지원 모두에 소극적이며 자신의 임무는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믿는 수동적(passive) 보호관찰관으로 분류하였다.

- ㉠ 지원을 강조하고, 통제는 약화되는 유형은 복지적 보호관찰관이다.
- ㉡ 지원과 통제를 모두 강조하는 유형은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다.
- ㉢ 지원과 통제가 모두 약화되는 유형은 수동적 보호관찰관이다.
- ㉣ 지원은 약화되고, 통제를 강조하는 유형은 처벌적 보호관찰관이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소장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
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제2항).

①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②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③ 동법 제63조 제2항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① 동법 제124조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석방시기)

제1항 :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제2항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3항 :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동법 시행령 제142조

③ 동법 제125조

문 17. 중간처우 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로는 외부방문, 귀휴, 외부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④ 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불확실성·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감압실(減壓室)로 불리기도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중간처우에는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기 위한 처우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실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도 관련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중간처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좁은 의미로는 사회와 구금시설의 중간에 위치한 일정한 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여 구금 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에 대한 원조 등의 처우를 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내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내 처우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시설내 처우를 전제로 일정한 사회와의 접촉을 허용하여 사회화를 꾀하는 개방처우(사회적 처우)를 포함한 개념이다. 즉 중간처우의 방식에는 사회 내 중간처우와 시설 내 중간처우가 있다.

문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 정답 : ①

- ☞ 해설 :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②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 ③ 동법 제23조 제2항
 - ④ 동법 제22조 제14항

문 19. 「소년법」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 ②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 ③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④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보호처분의 결정, 부가처분의 결정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3조 제1항).

* 소년법 제43조 제1항 :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① 동법 제43조 제2항
- ② 동법 제46조
- ④ 동법 제44조 제1항

문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의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②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③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